2022년 교직원 연말정산 안내

☞ 2022년 1월 26일(목)까지 나이스 입력 및 중빙서류 꼭! 제출해 주세요~

○ 2022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안내 ☞ [2022년 1월 15일(일) 오픈 예정]

- ▶ 연말정산은 나이스에 소득자 본인이 직접 입력하는게 원칙
- ▶ 과다공제로 연말정산 수정신고 발생시 소득자 본인 직접 관할세무서 자진신고 원칙《 연말정산 상담 전화 빠른 안내 》
- ▶ 연말정산간소화 이용방법: 국번없이 126 → 5 → 1
- ▶ 연말정산 세법상담: 국번없이 126 → 5 → 2
-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인터넷에서 조회할 수 있는 2022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2022년 1월 15일(일) 오픈될 예정(2022년 1월 20일(금)에 PDF파일 다운 받으시길 권장)입니다.※ 확정 소득자료 2022.1.20.(금)
- 본인의 소득공제를 조회하려면 공인인증서(사설 민간 인증서로도 홈택스 접속이 가능)가 있어야 하며, 또한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려면 사전에 해당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자료는 별도 동의절차가 없어도 조회 가능)
- ☞ 기한내 서류 미제출 시 2023년 5월 개별적으로 세무서에서 연말정산 받으셔야 합니다 ☞ 2022. 1. 15.(일) 이후 연말정산 변경사항 있을시 수시로 관련 내용은 소통메신저로 안내
- 할 예정입니다.

기부금 명세서에 입력할 각종 단체 사업자 번호(해당자 본인이 입력)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기부금종류	비고
교원단체총연합회		종교단체외 지정기부금(40)	해당자 입력
전국교직원노동조합	107-82-06408	종교단체외 지정기부금(40)	해당자 입력
공무원노동조합		종교단체외 지정기부금(40)	해당자 입력
국군장병위문금(국가보훈처)	116-83-00138	법정기부금(10)	해당자 입력

■ 나이스 입력 및 증빙서류 제출기간 ■

2022.1.20.~1.26까지

- ▶ 홈텍스 소득세액공제자료 2022. 1. 15. (일) 오픈 예정
- ▶ 2022년 1월 20일(금)에 PDF파일 다운 받아 입력 권장
 - 확정소득자료 1월 20일(금)
- ▶ 2022년 연말정산은 홈텍스에서 다운 받은 PDF파일 업로드로 진행 합니다.

1. 국세청홈텍스(http://www.hometax.go.kr) 인증서 로그인→조회/발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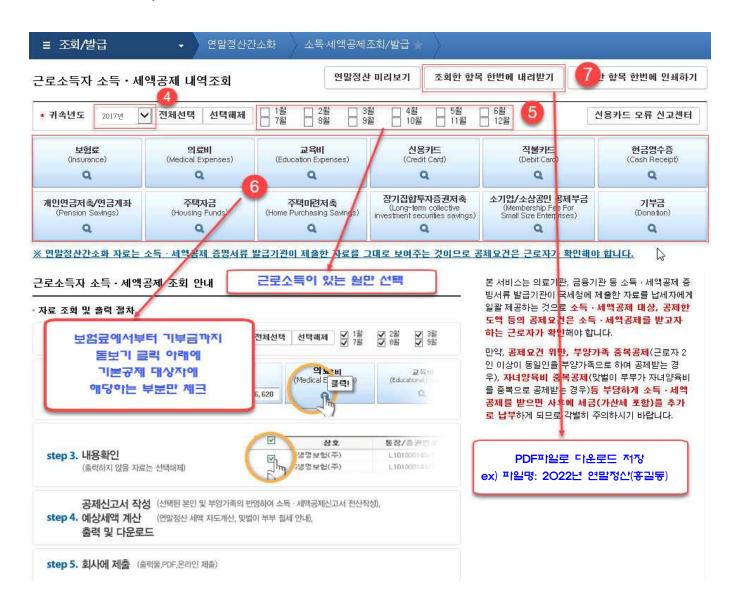


- ▶ 본인 공인인증서등록 방법→홈텍스 상단 로그인 클릭→공인인증서등록→주민등록번호입력→ 등록하기→해당공인인증서선택후→확인
- ▶ 본인의 소득공제를 조회하려면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며사설 민간 인증서로도 홈택스 접속이 가능), 또한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려면 사전에 해당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자료는 별도 동의절차가 없어도 조회 가능)

2. 연말정산 간소화→소득세액공제조회/발급



3. 귀속년도 2022년→근로소득이 있는 월만 선택→보험료부터 기부금까지 돋보기 클릭(해당 세액공제 아래에 기본공제 대상자에만 체크)→조회한 항목 한번에 내려받기→PDF파일로 저장(비밀번호 없이, 파일명은 2022년 연말정산 본인 성명)



4. 나이스 접속→기본메뉴→나의메뉴→연말정산→정산공제자료등록→귀속년도 2022년→조회→PDF업로드→ 찾기 [홈텍스에서 다운 받은 PDF파일(2022년 연말정산 홍길동.pdf) 파일 찾기]→등록



☞ 파일 업로드시 주의사항 ☜

- ▶ 업로드시 인적공제내역에 존재하지 않는 자료는 등록 안 되오니 먼저 인적공제내역에 입력 후 등 록하십시오.
 - → 인적공제 내역에 존재하는 대상자만 업로드하여 적용 가능
 - → 소득공제 받고 싶은 인적공제가 먼저 등록 되어 있어야함
- ▶ 상세내역(의료비, 기부금, (개인)연금저축/퇴직연금, 주택마련저축, 장기집합증권저축) 자료만 개별 내역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 ▶ 국세청 연말정산 사이트에서 PDF파일 다운로드시 비밀번호를 설정한 경우 비밀번호 입력란에 입력해야합니다.
- ▶ PDF파일업로드 메뉴에서 등록한 파일은 업로드 이후에는 업로드 한 파일을 다운받을 수 없습니다.

☞ 입력시 유의 사항 ☜

- 1. 정산공제자료 PDF파일 등록전 인적공제 대상자 확인후 소득 기본대상자가 아닌 대상자는 삭제 후 업로드 해야함.
- → 홈텍스에서 받은 파일의 기본공제 대상자와 나이스 정산공제자료-인적공제 기본대상자가 일치 해 야함(홈텍스 PDF파일 다운로드시에도 기본공제 대상자만 받아야함)
- → 인적공제 대상자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확인 요함
- 2. 홈텍스 공제자료 외 의료비지급명세서등록, 기부금명세서등록 입력시 사업자등록번호 및 주민등록 번호는 숫자만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ex) $750308-1234567 \rightarrow 7503081234567$

증 빙 서 류 제 출

제출서류	대상 및 증빙	방 법	
① 소득공제신고서	전교직원 나이스 출력물 서명 제출	☞ 나이스→나의메뉴→연말정산→ 정산공제자료등록→소득공제신고서탭→귀속년도(2022년)→조회 후 출력 서명 제출	
② 의료비공제신고서	해당자 나이스 출력물 서명제출	☞ 나이스→나의메뉴→연말정산→ 의료비지금명세서등록→귀속년도(2022년)→조회 후 출력 서명 제출	
③ 기부금공제신고서	해당자 나이스 출력물 서명제출	☞ 나이스→나의메뉴→연말정산→ 기부금명세서등록→귀속년도(2022년)→조회 후 출력 서명 제출	
④ 연금저축공제, 월세명세서	해당자 나이스 출력물 서명제출	☞ 나이스→나의메뉴→연말정산→ 연금저축공제등록→귀속년도(2022년)→조회 후 출력 서명 제출 ☞ 나이스→나의메뉴→연말정산→ 월세명세서등록→귀속년도(2022년)→조회 후 출력 서명 제출	
⑤ 주민등록등본	전직원 의무 제출	☞ 민원24: http://www.minwon.go.kr	
⑥ 가족관계증명서	부양대상가족이 주거를 함께 아니하는 경우만 제출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http://efamily.scourt.go.kr	
⑦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 및 기타 증빙서류	전교직원 제출	☞ 국세청홈텍스(http://www.hometax.go.kr) 인증서 로그인→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근로소득자 세액공제 내역조회→귀속년도(2022년)→근로소득이 있는 월만 선택→보험료부터 기부금까지 돋보기 클릭(해당 세액공제 아래에 기본공제 대상자에만 체크)→조회한 항목 한번에 내려받기→PDF파일 암호 없이 저장[파일명: 2022년 연말정산 본인성명.pdf]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려받은"PDF파일도 제출 요함" ※ 국세청에서 제공되지 않는 의료비,기부금,교육비등은 해당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 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원본-도장확인)	
* 모든 신고서에는 <u>"신고인"란에 성명기재후 서명 꼭</u> 해주세요.			